『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』 2021년 선정계획 공고

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 2021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개 요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 colspan="2"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>위탁운용금액 및 선 정 운용사수</td><td>블라인드펀드

위탁운용금액 : 100억원 이내
선정 운용사 : 2개사</td><td>프로젝트펀드

위탁운용금액 : 100억원 이내
선정 운용사 : 2개사 이내</td></tr>
<tr><td>운 용 사 신청자격</td><td>○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, 수시 블라인드펀드 선정 운용사*
* 성장금융 주관, 기업투자 투자제안형</td><td>○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, 수시 프로젝트펀드 신청 운용사*
* 성장금융 주관, 기업투자 투자제안형</td></tr>
<tr><td>출자대상 투자기구</td><td colspan="2">○ 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’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,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-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·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, 펀드 결성시 별도 협의
○ ‘여신전문금융업법’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
○ ‘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’에 의한 벤처투자조합
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</td></tr>
<tr><td>운 용 사 선정방법</td><td colspan="2"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
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
* www.kgrowth.or.kr</td></tr>
<tr><td>접수일시</td><td colspan="2">정책형 뉴딜펀드 블라인드펀드 선정 운용사,
정책형 뉴딜펀드 프로젝트펀드 신청 운용사 대상 개별 안내</td></tr>
<tr><td>심사결과 발 표</td><td>2021년 8월말 예정
* 지원결과,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</td><td>수시접수・수시발표</td></tr>
<tr><td>펀 드 결성시한</td><td>2021년 12월 31일
(협의 하에 2개월 이내 연장가능)</td><td>선정일로부터 4개월 내
(협의 하에 2개월 이내 연장가능)</td></tr>
</table>

2. 선정 기준 및 의무비율

세부내용
블라인드펀드 ○ (협업방안) 제안펀드·제안사·피투자기업과 하나금융그룹간 시너지 창출 및 협업 방안을 운용사가 자율 제안 - 방안은 구체적·현실적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규약에 반영 예정 - 제안펀드 수탁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지정해 제안할 경우 선정 시 반영 ○ (기술금융) 우수 기술기업*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 *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(TI5) 이상이거나,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' 및 '발명진흥법'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○ 이외,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은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 **프로젝트펀드** ○ 상기 블라인드펀드의 선정 기준 및 의무비율이 적용되며, 법인 형태의 기업에 투자* * 인프라 사업 자체(사업시행법인 또는 SPC 포함)에 투자하는 프로젝트펀드는 제외

3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
출자비율	○ (블라인드) 목표 결성금액의 30% 이내 ○ (프로젝트) 정책형 뉴딜펀드와 합산해 목표 결성금액의 100% 이내* * GP출자금 제외
운용사 출자비율	○ 약정총액의 1% 이상* 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* 유한회사(LLC)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
존속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
투자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

항 목	세부내용
운용보수 및 핵심 운용인력	○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
출자자 제한	○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, 법인이 원칙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,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 등은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협의
수탁회사	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계감사인	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드 전자보고 시스템	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
기 타	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- 결성 과정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주요 출자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변경 가능 ○ 최다출자자 우대 -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을 우대적용(예: 관리보수 인하) 가능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름

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○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
※ 다만,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

○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
○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○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○ 펀드의 목표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)에 미달하는 경우

○ 본 펀드의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○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
○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5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○ 결성시한(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
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

○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
○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
○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□ 기타

○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
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

6. 선정절차 및 문의방법

□ 선정절차

○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구술심사 → 최종 선정

- 프로젝트펀드의 경우, 수시접수·수시선정으로 상기 절차 일부 변동 가능

□ 출자 설명회

○ 2021년 6월 25일(금) 홈페이지 게시 예정

□ 문의방법

○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(문의사항 집계, FAQ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)

- 한국성장금융 신사업팀(02-2090-9144, dglee@kgrowth.or.kr)

◇ 상기 외 사항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

2021년 6월 18일

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